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42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보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수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9. 17.

다. 회 부 일: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예산 집행률은 비교적 낮게(2023년 기준 140개 사업, 예산액 1,000억원, 집행률 70%) 나타났으며,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방문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인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 건설 및 시공 지연 등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없었음.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사업의 이행 수준이 다를 경우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 성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고,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관광 개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종료된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등 법률체계를 강화할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 7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u>

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 제2항에 따른 관광

	<u>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u> <u>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u> <u>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u> <u>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u> <u>다.</u>
--	--

다. 검토사항

-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통상 5~10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남부권, 충청유교문화권, 서부내륙권 등 3개 광역사업에 총 4조 2천억을 투자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런 관광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미흡,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잦아 이로 인한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¹⁾.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1) <지자체들 수십 억 들여 너도나도 ‘출렁다리’...관광객 유입은?>, 2025. 2. 17., 뉴스1 (<https://v.daum.net/v/20250217061058037>)

사업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남부권	2023	5,500	-	-	-	-	-	-	-	-	-	-	-
	2024	27,778	27,778	21,414	21,414	-	21,414	8,181	21,414	8,181	13,233	-	29.5
	2025	78,824	78,824	63,082	63,082	13,232	76,314	19,620	63,082	13,586	-	-	17.2
충청 유교 문화권	2022	20,427	20,427	16,427	16,427	23,149	39,576	9,158	16,427	1,680	29,888	530	8.2
	2023	34,031	34,031	29,006	29,006	29,183	58,189	21,815	29,006	4,446	36,374	-	13.1
	2024	22,783	22,783	21,933	21,933	36,374	58,307	24,544	21,933	6,579	33,763	-	28.9
	2025	15,181	15,181	12,788	12,788	33,763	46,551	18,356	12,788	5,568	-	-	36.7
서부 내륙권	2022	27,633	27,633	25,733	25,733	23,476	49,209	24,390	25,733	6,851	22,362	2,457	24.8
	2023	20,807	20,807	18,807	18,807	22,362	41,169	13,255	18,807	1,247	27,507	407	6.0
	2024	19,653	19,653	18,857	18,857	27,507	46,364	20,590	18,857	6,448	23,274	2,499	32.8
	2025	16,398	16,398	11,727	11,727	23,274	35,001	16,217	11,727	8,008	-	-	48.8

* 2025. 9. 기준 실집행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또한, 해당 개발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도 미흡하여 방문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²⁾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

2)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사업 관리·평가 사례]

유사사업	소관부처	근거법령	관련 조항	전담기관
지방재정투자사업관리, 컨설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제37조의2(조사기관)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성과관리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평가) 제27조의2(전담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2(정책 분석, 평가) 제46조(전문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 정책연구센터
		농촌공간 재구조 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행계획 평가) 제35조(정책지원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중기부 지원사업관리	중소벤처 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제8조(평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설)정책정보평가사 업단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 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평가) *시행령 제17조(전담기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및 관리	해양 수산부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시행 관리) 제57조(전담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대부분의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되므로³⁾, 동 개정안의

보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효율적·종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개정을 통하여 부진한 관광개발사업의 원인 분석 및 문제 해결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진척율을 제고할 수 있고,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람객 수 등 경제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

3) 광역권 관광개발,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관광자원 기반조성, 폐광지역 관광산업활성화 등 총 2,153억여원 규모의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이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될 예정임.

구분		평가 결과	개선 방안
광역권 개발 사업군 1) 남부권 2) 서부내륙권 3) 충청유교문화권 4) 해안및내륙권(해수부)	계획 평가	(1) 동일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 반복 추진 (2) 사업별 성과지표가 상이하여 사업 간 성과 비교가 어려움 (3)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하여 연계·협력을 위한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목적 달성에 한계 (4) 지자체별 균등한 사업 배분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 존재	(1) 광역권 개발 사업의 사전 점검 기준 수립 등을 통한 자원 효율화 추진 (2) 광역권 개발 사업의 순서 및 추진 시기를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중장기 계획 마련 (3) 동일 지자체에서 광역권 개발 사업이 횡수(예: 세 차례 이상), 투자비 등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추진된 경우, 일정 기간(예: 10년) 동안 새로운 광역권 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 (4) 신규 사업 추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근 10년 동안 수행된 기존 광역권 개발 사업의 내용 및 대상지, 공모형 사업 등 타 국비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사전 스크리닝 (5) 관광객 방문 만족도, 관광객 소비 증가율(지역 경제 기여도), 지역관광 일자리 증가율 등 사업의 최종 성과(outcomes)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성과 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과정 평가	(1)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 (2)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요인 다수 발생 (3)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미비	(6) 사업 추진 지자체가 세목별 투입 예산, 단계별 추진 과정 및 이력을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에 직접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 (7) 연계·협력 사업 추진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 (8) 재무적 성과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강화 (9) 광역권 개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 체계 마련 (10)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영향 평가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사업의 추진상황·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예산 투입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 병행 (2) 후속 사업을 통해 성과 유지 및 확대 방안 필요